

중고품 거래의 과세 합리화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방안*

: 스위스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이창규** · 서정화***

〈요 약〉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자원순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VAT)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이중과세, 품목 간 조세 불균형,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약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핵심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재판매 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에만 국한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른 중고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매입세액 미공제로 인한 수출 부가가치세 미환급은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위스와 일본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조세 특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논리적 정합성을 회복시키는 필수적인 장치임을 논증한다. 스위스는 독자적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 부가가치에만 과세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며, 일본은 장부 기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유연한 특례를 통해 중고품 거래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모든 중고 재화로 확대하고, 매입가액에 10/110을 곱하는 완전공제 방식을 도입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중고품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자원순환 경제의 활성화와 조세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중고거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중과세, 자원순환 경제, 조세 정의

* 이 연구는 2025년도 협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25-0061).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전담교수, 법학박사, 기술거래사, sunrise@cau.ac.kr, 주저자

*** 협성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경영학박사, jhsuh81@omail.uhs.ac.kr, 교신저자

I. 서 론(序論)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환경 보호와 합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중고거래 시장은 전례 없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약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의 중고품 수출 실적 또한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삼일PwC경영연구원 2022). 이러한 시장의 성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자원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 제도는 중고거래 시장의 고유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중대한 문제점을 초래하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서희열 2025). 이 글은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가 중고거래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원순환 경제의 활성화와 조세 정의의 실현을 위한 비전을 탐구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방식’에 기반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며, 사업자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¹⁾ 그러나 중고품 판매 사업자의 주요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개인,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첫째, 이중과세의 문제이다. 중고품 판매 사업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중고품을 매입하나, 매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판매 시 총 매출액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재화에 대해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부가가치세의 근본 원칙인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위배하고, 사실상 거래세(turnover tax)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러한 누적효과는 최종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 둘째, 품목 간 차별과 조세 형평성의 훼손 문제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고자동차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며, 이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이외의 중고품에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동일한 중고품임에도 불구하고 품목 간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한다. 이는 헌법의 평등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중고품 시장의 공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서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제39조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수출 경쟁력 약화이다. 매입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수출 시 환급되지 않는 문제는 국내 중고품의 국제 시장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수출 위축을 초래한다. 이는 자원순환 경제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와 상충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세우대조치’ 또는 ‘조세특혜’로 오인하며, 이를 다른 중고품에 확대 적용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²⁾ 그러나 이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특혜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에만 과세되도록 하여 이중과세의 누적효과를 방지하고 과세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회복시키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는 조세 형평성과 시장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며, 중고거래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간으로 작용한다.

중고거래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원순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입법자 및 정책당국은 중고자동차 이외의 모든 중고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품목 간 차별을 제거하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핵심적 조치이다. 또한, 수출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활성화함으로써 한국 중고품의 국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경제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소비자의 구매력 증진, 시장 성장의 촉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다층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전면적 확대는 이중과세 및 품목 간 불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중고거래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며, 자원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핵심적 해법이다. 이는 조세 정의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젖힐 것이다.

2. 선행 연구 분석

선행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특히 ‘중고차’ 및 ‘중고품 거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박명호(2010)의 선행연구는 중고품 거래

2)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누25185, 2011.02.15)는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마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행위에 대해, 이를 근거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악용 사례’일 뿐,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제도의 도입 목적과 긍정적 기능을 고려할 때,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가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분석하며 마진 과세 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그 한계점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중고품 거래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 다른 연구인 박명호(2012)는 농산물 유통을 중심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개념, 적용 범위, 그리고 제도적 결함과 개선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특정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을 밝혔다. 박선희·장재형(2021)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을 통계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 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부가가치세 체계 내에서 갖는 이론적, 실증적 중요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중고차 및 중고품 거래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중고차 시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조명환·송헌재(2020)의 논문이 있으며, 이 연구는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소비자 후생과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박성욱·김영우·김서현(2023)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중고품 거래로 연구 범위를 확대한 서희열(2025)의 연구는, 급성장하는 중고품 시장에서 비사업자와의 거래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를 지적하며, 중고자동차에만 국한된 제도를 확대전환, 의류, 가전 등 일반 중고품으로 확대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조세의 공정성과 자원 재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역설하며, 본 연구의 직접적인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이 글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계승하고 확장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선행연구들이 중고차나 특정 품목에 초점을 맞추거나 제도의 부분적 문제를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가 중고거래 시장 전반에 야기하는 이중과세, 조세 역진성, 품목 간 불평등,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약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보다 깊이 있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증한다. 둘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단순히 ‘조세 특혜’가 아닌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필수적인 구조적 장치’로 재규정하며, 그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강화한다. 셋째, 스위스와 일본의 선진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실제 부가가치에만 과세하는 원칙의 일관된 적용과 장부 기록 중심의 유연한 행정 시스템 도입 등 국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을 모든 중고 재화로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함으로써, 공정한 과세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독창적 의의를 갖는다.

II. 중고품 거래 현황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문제점

1. 중고품 시장의 현황 및 성장 배경

가. 중고품 개념과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중고품이란 한 번 사용되거나 소비되었지만, 여전히 재사용 또는 거래가 가능한 제품을 의미한다. 이는 새 제품이 아닌 ‘신품(新品)’의 반대 개념으로, 중고 시장을 통해 거래되며 저렴한 가격과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과 맞물려 성장하고 있다. 환경 보호와 합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됨에 따라, 중고거래 시장은 전례 없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자원순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고품, 즉 한 번 사용되었으나 여전히 재사용 또는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새 제품(신품)의 반대 개념으로, 저렴한 가격과 가치 중심의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적 트렌드와 조화를 이루며 시장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김고운·강원삼·이혜진 2022).

2008년 약 4조 원에 불과했던 국내 중고품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소비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에 힘입어 2025년 약 43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8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케이티 나스미디어 2024). 이러한 양적 팽창은 모바일 거래 플랫폼의 사용자 수 증가로 더욱 명확히 드러나며, 2025년 국내 중고 의류 거래 모바일 앱 사용자 수는 2,36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³⁾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중고거래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며, 조세 형평성과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중고거래 시장의 급성장은 단순한 경제적 동기를 초월하여, 자원 재활용과 환경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 소비’의 확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김은희·이상현 2024). 과거 중고품 거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필요한 물품 처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합리적 소비의 핵심 축이자 환경 보호의 실질적 실천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소비자 설문에 따르면, 중고품 판매의 주요 동기는 ‘불필요한 물품 정리’와 ‘버리기 아까움’이며, 구매 동기는 ‘저렴한 가격’과 ‘신품 구매에 대한 부담 경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동기 외에도, 환경 지속가능성과 의식 있는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중고거래는 자원 순환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행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단순한 거래 공간을 넘어, 과소비를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교육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중고거래는 물건의 재사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부담을 완화하는 순환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

3) 디지털트렌드코리아, “고물가 시대, ‘빈티지’가 새롭게 뜬다 : 중고 의류 거래 시장의 구조적 성장”
<http://digitaltrendkorea.com/?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0846650&t=board>(최종방문일 : 2025년 11월 11일)

로 인식되며,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강유진 · 박민정 2024).

특히, 세대별 소비 트렌드는 중고거래 시장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밝게 조명한다. 예를 들어, 번개장터와 같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용자 중 80%가 MZ세대(밀레니얼 및 Z세대)로 구성되며, 이들은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합리적 소비’를 중시한다(번개장터 2020). 이들에게 중고거래는 단순히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한정판 스니커즈나 스타 굿즈와 같은 독특한 아이템을 통해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소비자 행태의 변화는 중고거래 시장을 단순한 경제적 거래 공간에서 문화적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로 전환시키며,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의 확산을 가속화한다.

중고거래 시장은 자원순환 경제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나,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는 이중과세, 품목 간 차별, 그리고 시장 성장 저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전면적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세 형평성과 시장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적 해법이다(박선희 · 장재형 2021). 이는 중고거래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자원순환 경제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세제 개혁은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가치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중고거래 시장 성장 이면과 세제 개편 필요성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환경 지속가능성과 합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배경으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선도 기업들과 특정 영역에 특화된 전문 플랫폼들의 치열한 경쟁 구도로 재편되며, 새로운 경제적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각 플랫폼은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과 명확한 타겟층을 기반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며, 중고거래 시장의 본질을 혁신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이경미 · 류진주 · 김민정 · 정다영 2022).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양적 · 질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시장의 역동적 변화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며, 중고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선도 플랫폼과 전문화된 틈새 플랫폼 간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소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각 플랫폼은 고유한 전략과 타겟층을 바탕으로 시장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이끌며, 중고거래를 단순한 물품 교환에서 문화적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로 재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근마켓은 약 1,733만 명의 이용자를 기록하며 국내 중고거래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KB증권 2022). 이 플랫폼의 경쟁력은 ‘동네 중심의 중고거래’라는 혁신적 콘셉트와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UI)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중개 수수료 외에도 하이퍼로컬(hyper-local) 기반의 프리미엄 광고와 중고차 매물 광고를 통해 전체 매출의 99.8%를 창출하며, 지역 중심의 거래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동시에 촉진하는 강력한 모델로 평가된다. 그리고 번개장터는 10~20대 이용자 비율이 높고 MZ세대가 전체 이용자의 80%를 차지하는 플랫폼으로, '취향 기반의 거래'라는 독특한 포지셔닝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KB증권 2022). 스니커즈, 스타 굿즈 등 특정 취향 품목에 특화된 큐레이션 서비스와 브랜드 팔로잉 기능을 제공하며, 중고거래를 단순한 경제적 행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소비 활동으로 확장시킨다. 이는 MZ세대의 가치 지향적 소비 트렌드와 조화를 이루며, 중고거래 시장의 문화적 가치를 증폭시키는 혁신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 크림(KREAM)은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 시장에서 출발하여 중고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전문 플랫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KB증권 2022). 이 플랫폼은 엄격한 검수 서비스를 통해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거래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전문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한다.

〈표 1〉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별 비즈니스 모델 및 특징 비교

플랫폼명	주 이용자층	핵심 비즈니스 모델 (수익원)	경쟁 우위
당근마켓	전 연령대 (40대, 50대 이상)	광고 (99.8%), 중개 수수료	동네 중심, 하이퍼로컬 기반
번개장터	MZ세대 (20대, 10대)	거래 수수료, 광고	취향 기반 큐레이션, 전문화
크림 (KREAM)	한정판, 패션 리셀러	검수 서비스, 거래 수수료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이와 같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개인 간 거래(C2C)를 넘어 기업형 거래(B2C, C2B)로 전문화되며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모우·최양선 2023).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의 기술적 혁신과 소비자의 가치 지향적 행태가 결합된 결과로, 자원순환 경제와 환경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역동적 변화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중대한 문제점을 초래한다. 특히,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전, 가구, 전자기기 등 일반 중고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중과세 및 누적과세(cascading effect)의 부담을 안게 된다(정기용 2013).

그리하여 중고거래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원순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중고품으로 확대 적용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회복하며, 소비자 가격 안정화, 시장 성장 촉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또한, 이러한 세제 개혁은 중고품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자원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문제점

가. 2010년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배경 및 현재의 상황 변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체계 내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보완 장치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2010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중고품 전반에서 중고자동차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이 조치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행정 효율화 차원이 아니라, 당시 정부의 제도 인식과 조세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세액공제(input tax credit)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로,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정부는 해당 제도를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로 보기보다는,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 특례(tax expenditure) 또는 조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기획재정부 2010).

이러한 인식은 제도의 실질적 기능보다 재정 통제와 허위 공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방향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공제율이 이론적 수준(10/110)보다 낮게 책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중고자동차의 공제율은 2010년 10/110에서 2011년 이후 9/109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중복과세 해소 장치가 아닌, 행정적 관리 대상의 특례로 인식되었음을 방증한다. 당시 정부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관리 및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추구하였다. 중고품 전반에 공제를 적용할 경우 품목별 거래 특성과 규모가 다양하여 매입 사실의 객관적 증빙이 곤란하고, 이에 따라 조세 회피 및 허위 거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거래 경로가 명확하고 등록 및 이전 절차가 제도적으로 확보된 중고자동차에 한정하여 공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중과세 해소보다 세원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0년의 제도 축소는 조세 형평의 원리보다는 행정적 통제의 실현에 방점이 찍힌 조세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2010년 당시 중고거래 시장은 경제적 중요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약 43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자원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김민서 · 최화준 · 김주희 2025).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중고품 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중고거래는 더 이상 ‘저소득층의 생계형 거래’가 아니라 합리적 소비와 지속가능성의 상징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더 이상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 구조 전반의 순환과세 체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0년 이

전 중고품 거래는 불필요 물품 처분이나 경제적 궁핍의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고품 거래는 환경적 책임과 가치 소비(value-based consumption)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중고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단순한 조세정책의 조정이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또한 변화한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매출이 인정되는 경우 증빙이 불충분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추계 등을 통해 합리적인 매입원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⁴⁾ 이는 기존의 형식적 증빙 중심의 과세관행에서 벗어나, 중고품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과세 원칙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 판례는 중고품 거래의 구조적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확대 논리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기능한다.

유럽연합(EU) 및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마진과세제도(margin taxation) 혹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며, 중고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박명호 2012). 이러한 제도들은 자원순환 촉진과 조세 형평의 조화를 달성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또한 중고자동차 및 중고의류의 수출 비중이 급증하면서, 국제적 과세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확대는 국내 조세 형평뿐 아니라 국제무역 환경에서의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도 평가될 수 있다.

2010년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축소는 정부가 제도를 조세형평 실현 수단이 아닌 ‘조세특례적 지원제도’로 한정적으로 인식한 결과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중고거래 시장은 자원순환 경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중과세 문제의 해소와 조세 정의의 구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최근 법원의 판례와 사회적 가치소비 문화의 확산, 그리고 국제적 제도 운영 사례는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할 제도적 시점이 도래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중고자동차에 국한된 ‘특혜적 제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논리적 정합성과 조세 형평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구조적 장치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나.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방식을 전제로 한 전단계세액공제 기제를 핵심 구조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매입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고품 거래의 주요 매입처는 개인, 면세사업

4)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444 판결.

자,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하여 중고품 거래에서는 불가피하게 제도적 모순과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는 크게 이중과세·누적과세 문제와 품목 간 차별이라는 두 축으로 구체화된다(이수진 2014).

첫째, 이중과세 및 누적과세의 구조적 문제이다. 중고품 매매업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내재된 가격으로 재화를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매입 단계에서 세액 공제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이후 해당 재화를 재판매하는 시점에서는 총 판매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다시금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동일한 재화에 대해 반복적 과세가 이루어지는 전형적 이중과세 현상을 야기하며, 본래 부가가치세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순수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라는 원리를 심각히 훼손한다. 나아가 반복적 누적과세 효과는 거래단계를 거듭할수록 악화되며,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은 인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약하고, 중고거래 시장의 활력과 확대를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둘째, 품목 간 차별과 조세 형평의 훼손 문제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전, 가구, 전자기기 등 일반 중고품은 동일한 재사용 구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 결과, 중고품 시장 내부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본질을 지닌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자의적 차별이 형성되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제도적 불균형은 시장의 자율적 성장 가능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과도한 경쟁 우위를 발생시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본래 농·축·수·임산물 등 면세 재화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규정이다(박명호 2012). 그러나 중고자동차 및 재활용폐자원 거래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일종의 특권적 혜택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논리적 정합성을 회복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로 보아야 한다(박성욱·김영우·김서현 2023). 따라서 중고품 거래의 고유한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중고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과 시장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 개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고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단순히 재화 유통과정에서의 과세 왜곡에 머무르지 않는다. 최종 단계의 소비자 부담을 누적시키며 조세 역진성을 심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구매력 약화라는 사회경제적 불공정을 심화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의 제한적 의제매입세액공제 운용은 거래 투명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노출한다(박명호 2010). 예컨대 일부 중고차 거래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확대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의 조세 회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법적 음성거래를 조장하며, 세원 관리의 정확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중고품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중고품으로 확장하는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거래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디지털 세무관리 시스템 도입과 함께 매입금액 검증 절차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허위 계약서나 가공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를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과 조세 정의를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범용적 확대는 단순히 거래 단계에서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극적 조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원리의 정합성을 복원하고, 조세 정의 구현, 소비자 구매력 제고, 시장 투명성 강화, 나아가 자원순환 경제 촉진이라는 다차원적 효과를 창출하는 근본적 해법이다. 이는 중고거래 시장이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이며, 동시에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융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이다. 다음은 중고품 거래에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표이다.

〈표 2〉 중고품 거래에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문제점 분석

문제 유형	발생 메커니즘	관련 품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중과세	일반 소비자로부터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재판매 시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됨	일반 중고품 (가전, 가구, 전자기기 등)	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 가격 경쟁력 저하, 누적과세로 인한 최종 판매가격 상승
조세 형평성	중고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만 공제 특례가 적용되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 저해	일반 중고품 제외	동일한 성격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의 불균형으로 불공정 경쟁 환경 조성
세부담의 역진성	사업자가 부담한 세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짐	전체 중고품	저소득층의 중고품 구매 부담 증가, 서민경제 악화
행정적 비효율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매입가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세 회피 유인이 발생	중고자동차 등 공제 대상 품목	세무행정의 복잡성 및 비용 증가, 세원 투명성 저하

3. 소결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중고 휴대전화뿐 아니라 일반 중고품 전반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는 급변하는 시장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 역시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궁극적으로 세 부담의 완화가 중고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 확보로 직결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는 일부 구조적 불합리성, 예컨대 허위 가격 기재를 유인하는 취약성이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의 누적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단기적 완충 장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중고품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는 피상적 제도 보완을 넘어, 세제 시스템의 근본적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단기적 조정에서 장기적 혁신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중고 휴대폰을 비롯하여 가전제품·가구 등 일반 중고품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품목별 형평성의 결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는 불합리한 조세 구조로 발생하는 시장 왜곡을 완화하고, 보다 균형 있는 성장 기반을 형성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본질적으로 실제 매입세액 없이 일정 비율을 의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허위 가격 신고의 유인, 막대한 행정 비용 발생, 그리고 거래 투명성 저해 등의 구조적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유럽 주요국에서 도입·운영 중인 마진과세제도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마진)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진과세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지향하면서도, 실거래 기준 과세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허위 신고의 여지를 축소하며,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마진과세 도입 시에도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사업자 적응 기간, 과세 인프라 정비 등의 현실적 과제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제도 전환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은 단순히 조세 형평성 확보라는 협소한 차원을 넘어, 국가적 전략 과제인 순환경제의 정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는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환경 부담을 경감하려는 기업과 소비자의 노력을 세 부담이라는 역설적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이는 순환경제 체제 확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중고품

소비를 장려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중고품 거래를 단순 상업 활동이 아닌 환경 보전의 실질적 실천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시장 확대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 상호작용하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중고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국제적 경쟁 우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혁신적 재설계가 불가결하다. 단기적 입법 보완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병행한다면, 우리 사회는 중고품 거래를 통한 경제적 활력 제고뿐 아니라, 순환경제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전향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해외 제도로서의 스위스 및 일본의 사례 분석

1. 해외 사례를 통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국내 중고품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 정의와 시장 효율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구체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고품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하며, 그 결과 매입세액의 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은 사업자의 총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전면적으로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이중과세 및 누적과세(cascading effect)가 발생하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는 본래 부가가치세 제도가 지향하는 기본 원리, 즉 “실제 창출된 부가가치에 한해서만 과세한다(순이익 과세원칙)”는 국제적 보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박중수 2002).

국제적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스위스와 일본은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고품 거래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또는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정착시켜 왔다. 이들 국가는 비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일한 세제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조세 공정성과 시장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고자동차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중고품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을 유보하는 현 상황은 조세평등주의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자의적 차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현행 제도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중고품 가격에 이중과세된 세금이 전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곧 최종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국내 중고품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국내 시장을 넘어 국제 무역 환경에서도 심각한 파급효과를 낳는다. 국제 조세 원칙상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destination principle)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하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수출 시에도 매입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환급되지 않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5). 그 결과 국내 중고품은 수출 단가가 불필요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곧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직결되어 수출 위축을 야기한다. 반면 스위스와 일본의 사례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이중과세 및 경쟁왜곡을 방지하며, 나아가 시장의 공정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세 장치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1993년부터 중고자동차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약 30여 년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용해 왔다는 점이다(조명환·송헌재 2020). 이는 곧 제도 시행의 행정적 안정성과 집행상의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된 바 있으며, 이러한 축적된 경험은 정책적 확장성을 확보하는 데 강력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유럽연합(EU)식 마진과세 제도(Margin Tax Regime)를 선불리 채택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행정 비용과 납세 순응 비용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성공적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즉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중고자동차에서 일반 중고품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개편은 단순히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중고품의 최종 가격에서 불필요한 세금 누적을 제거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며, 이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나아가 중고품 재사용과 재활용이라는 순환경제의 핵심적 가치가 확산되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및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요컨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기반으로 한 중고품 과세 제도의 전면적 확장은 조세 정의의 회복, 시장 효율성의 제고, 국제 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순환경제 실현을 동시에 견인하는 다층적 정책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스위스와 일본의 의제매입세액공제도의 분석

가. 스위스의 제도 분석

(1) 스위스의 부가가치세 제도

유럽연합(EU)의 마진과세제도(margin scheme)와는 차별적인 경로를 택한 스위스 부가가치세법(MWSTG) 제28a조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국내 중고품 시장의 조세정책적 과제를 성찰함에 있어 중요한 비교법적 함의를 제공한다(박명호 2012).⁵⁾

스위스의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 제도는 소비 과세의 한 형태로,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단계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스

5) 유럽연합(EU) 마진과세제도(Margin Scheme)는 세금계산서 징수가 어려운 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 특정 상품에 대해, 재화의 판매 '마진'(이익)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위스 부가가치세(VAT) 제도는 연방정부 수준에서 부과되는 간접세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에 도입되어 단일 연방 세율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현재 표준세율은 약 7.7~8%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OECD 2024).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과되며, 부과된 세금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누적 과세를 방지하여 순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스위스 VAT는 3단계 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표준세율 외에도 숙박업에 적용되는 특별세율(약 3.8%)과 식료품, 의약품, 서적 등 필수재에 적용되는 경감세율(약 2.5%)이 존재한다(OECD 2024). 이러한 다양한 세율 체계는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본 생활필수품과 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EU VAT 지침을 준수할 의무는 없으나, 유럽 내 무역 활성화를 위해 EU와 일정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해외 기업이 스위스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VAT 등록 및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Laurent Lattmann 2020).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나 원격판매에 대한 과세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현대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한 세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같이 스위스 부가가치세 제도는 단일 연방세율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낮은 표준세율과 차별화된 경감세율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형평성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 거래 및 전자상거래에도 유연히 대응하는 현행화된 조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Switzerland Global Enterprise, 2020).

(2) 스위스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유럽 대륙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 아니며, 이러한 독립적 위상은 세제 운영에서도 독자적 특성을 드러낸다. 특히 부가가치세(VAT) 체계에 있어서, 다수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중고품 거래에 마진과세제도(margin taxation)를 채택하여 판매자가 매입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인 마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스위스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fictitious input tax deduction)를 도입하여 중고품 거래의 조세 형평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Switzerland Global Enterprise, 2020).

스위스 부가가치세법(Mehrwertsteuergesetz, 이하 “MWSTG”) 제28a조에서는 중고품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Abzug fiktiver Vorsteuer)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실제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납부로 간주되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장치이다.⁶⁾ 이 조항은 주로 사업자가 개인이나 부가가

6) Artikel 28a, Fiktiver Vorsteuerabzug

1 Werden Gegenstände von Personen gekauft, die sie ohne Vorsteuerabzug an den Käufer liefern (z.B. von Privatpersonen, von steuerbefreiten oder nicht steuerpflichtigen Unternehmen), so kann der Abnehmer auf dem Marktwert dieser Gegenstände den fiktiven Vorsteuerabzug geltend machen, sofern der Gegenstand von ihm für steuerbare Leistungen verwendet wird.

치세 면세 사업자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매할 때 적용된다.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업자가 과세 대상 사업에 사용할 경우, 그 물품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제1항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면세 기업으로부터 중고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해당 중고품을 과세 대상 용도로 사용할 때 그 시장 가치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시점은 물품을 취득한 당시의 시장 가치이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중고품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중고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평가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거래 행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특정 가능한 동산(identifiable movable goods)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여기서 ‘개별화 가능한 동산’이란 명확한 라벨링, 회계 기록 및 증빙서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MWST-Info 09 2025).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으로, 귀금속·보석류 등 특정 품목은 그 특성상 제외된다. 또한, MWSTG 제24a조에 따른 마진과세 적용 대상인 예술품, 고미술품 및 수집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며, 수입 물품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니다.⁷⁾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중고품을 취득해야 하며, 공급자는 면세사업자, 개인, 비영리단체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여야만 한다. 아울러, 거래 내역을 세부적으로 입증하는 송장, 계약서, 신용장, 영수증 등의 공식 증빙서류를 구비하며, 해당 서류에는 거래 유형, 거래 대상, 일자, 공급자 및 수령자 정보 등 부가가치세 산정에 필수적인 사항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박명호 2012). 이러한 엄격한 증거자료 요건은 조세 회피 및 부정거래 방지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제도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장치로 작동한다.

스위스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중고품 거래의 복잡한 세무적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심

2 Der fiktive Vorsteuerabzug wird nach dem für den Gegenstand anwendbaren Normalsatz berechnet. Er ist auf dem Marktwert des Gegenstandes zum Zeitpunkt des Erwerbs zu berechnen.

이 조항은 주로 사업자가 개인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매할 때 적용된다.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업자가 과세 대상 사업에 사용할 경우, 그 물품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제1항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면세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해당 물건을 과세 대상 용도로 사용할 때 그 시장 가치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시점은 물품을 취득한 당시의 시장 가치이다.

7) 예술품, 고미술품 등 수집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마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MWSTG §24a). 이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입법적 대응이며, EU 회원국들과의 차별화된 조세 전략으로서 국제 조세 및 부가가치세 체계 연구에 있어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된다. 스위스의 이러한 제도는 조세 정의 실현과 동시에 중고품 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정책적 비전을 담고 있다.

스위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취득하는 중고품의 매입가액은 거래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의제)된다. 이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가액에 내포된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역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⁸⁾

$$\text{의제매입세액} = \text{매입가액} \times \text{부가가치세율} / 1 + \text{부가가치세율}$$

이 산식은 부가가치세가 가산세(add-on tax)가 아닌, 거래가격에 내재된 내포세(built-in tax)라는 전제에 근거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중고품 거래에서도 세액이 부과된 것처럼 계산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현재 스위스의 일반 부가가치세율(Normalsatz)은 8.1%로 설정되어 있는데, 의제매입세액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⁹⁾

$$\text{의제매입세액} = \text{중고품 매입가액} \times 8.1 / 108.1$$

예컨대, 사업자가 1,000 프랑(CHF) 상당의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1,000 \times 8.1/108.1$ 로 계산되어 약 74.93 프랑(CHF)이 된다(MWST-Info 09 2025). 이는 해당 사업자가 중고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약 74.93 프랑(CHF)을 세무상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방식은 중고품 유통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중고품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가 거래가격에 내재하는 본질적 특성을 존중하는 조세 정책적 성과를 구현한다. 또한,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하여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자원순환 경제 촉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스위스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 차원을 넘어, 조세 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근간으로서 중고품 거래 특수성을 반영한 모범적 조세 설계로 평가받는다(Switzerland Global Enterprise 2020).

8) MWSTG §28a II.

9) MWSTG §25 I.

나. 일본의 제도

(1) 일본의 부가가치세 제도

일본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소비세(消費税)’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기본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수입에 부과되는 간접세다. 1989년에 도입된 이후, 현재는 표준세율 10%를 적용하며(2023년 기준), 일부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경감세율 8%가 적용된다(국중호 2019). 일본 소비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input tax credit method)을 채택하여 거래 각 단계에서 부과된 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순부가가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과세한다. 소비세법상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화되며, 2023년부터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강화를 위해 ‘적격청구서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이 도입되어, 적격청구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 이 제도는 국세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 최근 개혁의 일환이다. 또한, 일본 부가가치세 제도는 표준세율 외에도 식료품, 신문 등 필수품에 대해 감면세율 8%를 적용하는 다중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세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세무 행정은 재무성 산하 국세청이 담당하며,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4분기별로 소비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소비세는 국세로서 지방세와 구분되며, 일본 내에서의 내국세 행정 체계와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부산지방세무사회 2014). 일본 부가가치세(소비세)는 과세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체계적 관리하에, 다중 세율 구조와 최근의 인보이스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 경제 및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조세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2) 일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일본은 1988년 12월 「소비세법」을 제정함으로써 근본적인 조세 체계의 변화를 선언하였고, 1989년 4월 1일 그 첫걸음으로 소비세 제도를 공식 도입하였다. 초기의 일본 소비세 제도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법(credit-invoice method)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하는 전통적 세금계산서방식(invoice method)이 아닌 장부상의 기록과 물품납품서 또는 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산출된 매입액에 소비세율을 곱하는 장부방식(bookkeeping method)을 채택하였다(金子宏 2016). 이러한 초기 제도는 복잡한 거래 내역보다는 사업자의 장부기반 신고에 의존함으로써 비교적 간편한 행정 처리와 실질적 과세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경제 활동의 다변화, 그리고 국제 조세 환경의 엄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은 소비세법을 개정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기존의 장부방식에서 세금계산서방식으로 전격 전환하였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적격청구서(Qualified Invoice)」라 명명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재편되었

다. 이는 조세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기준을 체계화한 중대한 개혁으로 평가된다.¹⁰⁾ 특히, 2023년 9월 30일까지 일본 소비세법이 장부방식에 근거하던 시기에는, 중고품 매입에 대해 별도의 차등을 두지 않았다. 즉, 사업자는 중고품이든 신제품이든 간에 장부상 기록과 관련 증빙서류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으면 동일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중고품이라는 특성에 기반한 별도의 규제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는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증빙에 초점을 맞춘 세제 운용 철학을 반영한 정책적 결정으로, 소비세 법제 초창기의 효율성 및 포용적 과세 체계 구축 의지를 시사한다(紫田勝裕 1996).

그러나 2023년 10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방식으로서의 전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적용의 전제 조건이 강화되었고, 사업자는 매입 관련 적격청구서와 함께 관련 장부를 모두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품 거래의 특수한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중고품 판매 사업자(고물상, 전당포 영업자 등)가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였다. 이 경우 매입 관련 적격청구서가 부재하더라도 매입에 관한 장부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고품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비사업자와의 거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였다(国税庁 2019).

이 제도 변천은 일본 소비세법이 초기의 장부 중심 신고제도에서 투명성과 엄격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적격청구서 기반 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중고품 유통 및 비사업자 거래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깊은 의지를 드러낸다.¹²⁾ 이에 따라 일본 소비세 체계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정교화된 조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해당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물영업법(古物営業法)에 규정된 고물영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과거 전당포영업법(殿堂浦営業法)에 근거한 전당포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은 중고품 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사업자들의 독자적 특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거래 행위가 법적·경제적으로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대상 물품은 적격청구서 발행 의무가 없는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고물 및 준고물, 그리고 전당포물에 국한된다. 이는 중고품 거래의 상당 부분이 개인 혹은 소규모 비사업자로부터 이루어지는 현실적 거래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적격청구서 수취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장부 기록만으로도 매입

10) 消費税法 第30条 第1項.

11) 消費税法 第57条の4 第7項.

12) 이 밖에 택지건물거래법에 규정된 택지건물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건물과 재생자원 도매업 기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재생자원 등 관련 과세매입을 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해당 재생자원 등에 대해서도 消費税法 第57条の4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예외적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 또한, 해당 고물 또는 전당포물은 반드시 당해 사업자의 재고자산이어야 하며, 즉 판매를 목적으로 확보된 재화에 한하여 특례가 허용된다. 이로써 자기 사업 활동 내에서의 소모품이나 자산으로의 사용을 위한 취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요건은 매입세액공제가 기본적으로 상품의 유통과정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본래 목적에 충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으로,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성명·명칭 및 주소 혹은 소재지, 거래일자, 거래 내역, 지불 대가 금액, 그리고 해당 거래가 고물 영업 또는 전당포 영업 특례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장부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장부 기록 의무가 고물영업법(古物營業法) 및 전당포영업법(殿堂浦營業法)상 의무 기록 사항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고물영업법(古物營業法)은 1만 엔 미만의 고물 매입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성명이나 주소 기재를 면제하고 있는데, 소비세법상 장부 기록 요건 또한 이에 상응하여 완화된다. 이는 세법상의 장부 기록 요건을 기존 상법 및 해당 영업법 규정과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요컨대,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중고품 유통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 체계 간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교한 제도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중고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 일본 소비세법상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매입세액 산정 방식은 지불한 대가에 소비세율을 세율/1+세율로 곱하여 산출하는 체계로 정립되어 있다. 이는 거래 가격에 소비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포세(built-in tax)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매입가액에서 소비세 상당액을 역산하는 합리적인 논리 구조를 구현한다. 표준 소비세율이 7.8%인 일본의 경우, 중고품 매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¹³⁾

$$\text{매입세액} = \text{매입대가} \times 0.078 / 1 + 0.078$$

이 산정 방법은 적격청구서를 기반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실시하는 일반 사업자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며, 따라서 중고품 거래에서 증빙 방식이 장부 보존으로 간소화되었더라도, 매입세액 산정의 논리적 일관성과 세액 산출 비율은 일본 소비세체계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설계는 중고품 유통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인지하며, 행정적 편리함과 간소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세제도에 내재된 기본 원칙인 전단계매입세액공제의 지속적 적용과 일관

13) 국세인 소비세에서 7.8/110, 지방소비세에서 2.2/110를 공제받게 된다.

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적 결의는 조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며, 중고품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활력 증대와 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根本浩之 2019). 종합하자면, 일본 소비세법상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복잡다단한 유통 구조를 가진 중고시장에 대해 세제 운용의 실질적 효율성 및 공정성 원리와의 균형을 기하는 정교한 조세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3. 소결

스위스와 일본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사례는 단순히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적 특혜를 넘어선, 부가가치세제의 근본 원리와 기능을 유지·복원하는 핵심적 기제로서의 역할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양국은 공히 자국의 부가가치세 일반세율과 동일한 비율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로 적용함으로써, 중고품 거래에 부가되는 부가가치가 일반 재화와 대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을 견고히 한다. 이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라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정체성을 재천명하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우리나라도 이 선진 사례는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고자동차에 국한된 제한적 우대 조치에 머물러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부가가치세 운용의 기본 원리를 축소·왜곡하는 조세 정책적 실패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이 제도를 산업별 특혜가 아닌 보편적 과세 원칙의 필수적 요소로 재인식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중고품 시장의 실태와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중고품 거래 특유의 거래 증빙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비사업자 거래에 한해 면제하고 장부 기록만으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유연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행정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실제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한 제도적 지혜를 구현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도 장부 기록 중심의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중고품 전 분야로 확대할 정책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중고자동차에 국한된 현행 공제 범위를 모든 중고품으로 확대해 조세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역시 일반 재화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일반세율(10/110)을 적용하여 중고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합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고품 재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면서도 재판매 시에는 전체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이는 이미 최초 판매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물품에 대해 중고 유통 단계에서 다시 전액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중고품의 실제 부가가치는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마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전액에 과세함으로써, 거래 단계마다 세 부담이 누적되는 누적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중고품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거래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세수 감소 우려는 부가가치세 개념의 오해에서 비롯된 바, 매입세액공제는 세금 감면이 아니라 정상적 조세 운용의 일부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왜곡된 이중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위스와 일본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운영 경험은, 우리나라에 부분적 보완책에 머무르지 않고 전면적인 의제매입세액공제 도입과 확대 시행으로 조세 정의와 경제 효율성을 동시에 구현하며, 중고품 시장 활성화와 순환경제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중고품 시장 과세를 둘러싼 국제적 교훈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때 비로소 완성도를 갖게 되며,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확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세 개혁으로 자리매김한다.

IV. 우리나라에의 시사(示唆)

1.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조세정책적 과제

현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전 지구적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중고품 거래 시장은 단순한 재화의 교환을 넘어서 합리적 소비와 자원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의 전략적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중고거래 시장은 비약적 성장세를 나타내며 이미 43조 원 규모의 거대한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중고자동차 및 중고 의류의 수출 실적 증가는 중고품 거래가 국가 경제 및 국제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료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중고품 거래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현재 법률은 중고품 판매 사업자가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형식적 사유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선행 거래의 과세액이 이후 단계의 과세표준에 중복 포함됨으로써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및 누적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인 ‘순수한 부가가치에만 과세한다’는 국제조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며, 결국 부가가치세를 단순 총매출액에 대한 거래세(turnover tax)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

이러한 재정 및 제도적 결함은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낳는다. 첫째, 이중과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최종 소비자가격의 인위적 상승을 가져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며, 중고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 동인을 약화시킨다. 둘째, 고가격 구조는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중고품 수출 감소라는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 셋째, 현재의 중고자동차에 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조세 형평성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을 내포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철학적 기반을 훼손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모순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 스위스와 일본의 제도는 주목할 만하다. 양국은 중고품 거래 부가가치세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 및 마진과세 등 체계적 제도를 통해 중복 과세 및 누적 과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왔다. 스위스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실제 부가가치에만 과세함으로써 조세제도의 일관성을 견지하며, 일본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비사업자 거래에 대해 장부기록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융통성 있는 조세 설계를 선보였다. 양국의 경험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단순 우대정책이 아닌, 부가가치세 정상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메커니즘임을 확증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고자동차에 한정된 현행 제도 범위를 모든 중고 재화로 확대하고, 스위스와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이중과세 해소, 공정경쟁 환경 조성, 조세 정의 및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세제 보완을 넘어 국내 조세 체계의 근본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글로벌 지속가능성 요구에 부응하는 중대한 개혁 과제로 평가된다. 중고품 거래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순환경제 구축에서 점차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현시점에서,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진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세계적 모범 사례를 참고한 조세 제도의 정책적 혁신은 그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국내 중고품 거래 시장에 대한 조세 제도의 통합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은 이러한 미래 지향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확장 당위성 검토

선행연구인 박명호(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EU형 마진과세제도(Margin Taxation Scheme)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간의 제도적 차이 및 한계를 토대로, 한국의 세무행정 현실에 최적화된 제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EU) 및 주요 유럽국가에서 운용 중인 마진과세 방식은 거래 투명성, 세무행정비용, 제도 이식 가능성 등 다수의 측면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며, 한국적 조세행정 구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박명호 2010). 마진과세제도는 재화의 매입가와 매출가의 차액(마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중복과세를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실제 운용에서는 거래별 매입가·판매가·마진을 정밀하게 추적해야 하므로 행정 복잡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유럽 일부 국가는 포괄적 마진과세(Global Margin Scheme)와 개별거래별 마진과세(Individual Margin Scheme)를 병행 운용하고 있으나, 행정 효율성 저하와 검증의 어려움으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현실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일본 역시 2004년 중고품 과세체계 개편 당시 마진과세를 검토했으나, 행정비용 대비 효익이 낮고 검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유지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중고자동차 거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왔으며, 약 30여 년간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 왔다. 이 제도는 세금계산서 중심의 전단계세액공제 구조와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마진 계산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명한 회계처리와 투명한 세원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적 안정성은 단순한 제도 유지의 차원을 넘어, 향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확대와 고도화를 위한 행정적 플랫폼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 EU형 마진과세제도는 거래당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을 개별적으로 검증해야 하므로 새로운 전산망 구축, 납세자 교육, 세무회계 인프라 재정비 등에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OECD 2024). 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확장은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정책적 진화(policy evolution)의 형태로 비용 효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정합성을 복원하는 장치이다.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재화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재판매 시 이중과세(cascading taxation)가 발생한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조세특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공정성을 회복하는 제도이다. 공제율을 10/110으로 통일할 경우 마진과세와 동일한 조세효과를 가지면서도 훨씬 간명한 행정구조를 제공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인 “순수 부가가치 과세”를 실현하고, 동일한 경제적 거래에 대해 동일한 조세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 또한 일본의 사례처럼 세금계산서 대신 장부기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납세준응도 향상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중과세 제거는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구매력을 높이고, 중고품 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 동시에 수출 단계에서의 부가세 부담이 경감되어 한국 중고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중고품 거래의 제도적 활성화는 탄소중립과 ESG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며, 재화의 수명 연장을 통한 자원 효율성을 제고한다. 마진과세제도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모두 중복과세 방지를 목표로 하나, 한국의 조세행정 인프라·시장구조·납세자 행태를 고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가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경험과 데이터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도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합리적 공제율(10/110)과 적용대상의 전면 확대가 조세정의 실현, 시장 투명성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구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세개혁 방향임을 제시한다.

3. 스위스 및 일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가. 스위스의 독립적인 세제 운용 및 명확한 적용 기준

스위스 부가가치세법(MWSTG) 제28a조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중고품 거래에서

매매 단계마다 과세가 반복되어 동일한 거래 가치에 대해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이른바 ‘반복 과세(이중과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고안된 제도적 산물이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다수 채택하고 있는 마진과세제도(margin scheme)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인 전 단계 세액공제(input tax deduction)를 중고품 거래에도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입법적 접근을 취한다. 다시 말해, 스위스의 입법은 중고품 거래를 일반 재화 거래와 동일한 과세 체계 안에 포함시키려는 제도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같은 제도의 적합성과 신뢰성은 엄격히 정립된 적격 매입 요건과 증빙 절차를 통해 확보된다. 사업자가 매입하는 재화는 반드시 개별화 가능한 동산(identifiable movable goods)에 한정되며,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과 대상의 불필요한 확장을 방지하고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한다. 이는 국내 중고품 과세 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에 한정되는데, 이러한 원칙은 “실제 부가가치만을 과세한다”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규범을 충실히 구현한다. 그 결과, 누적 과세 및 반복 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이 방지되고, 중고품 시장의 조세 공정성이 확립된다. 아울러 사업자는 송장,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 거래 증거자료를 적법하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은 거래의 실질을 입증함과 동시에, 국세당국의 사후관리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핵심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고 행정 효율성 또한 제고된다.

결국 스위스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특정 국가의 조세 정책에 한정되지 않고, 중고품 거래에서 조세 정의의 실현하며 부가가치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보편적 조세 시스템으로서의 함의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중고자동차에 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범위를 전 중고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가가치세 원리의 복원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스위스의 제도는 중고품 시장 왜곡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가능케 하는 건고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확장은 단순한 세원 관리의 문제를 넘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와 조세 정의(tax justice)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으로 기능할 것이다.

나. 일본의 장부방식 기반의 유연한 제도 운용

일본은 소비세 제도의 도입 이래 중고품 거래 시장의 독특한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조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실현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금계산서 방식(invoice method) 전환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장부 방식(bookkeeping method)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제도를 유지해온 점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사례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세금계산서 방식을 준용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확보가 곤란한 중고품 거래의 특성

을 인정하여 장부 기록만으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세제체계의 유연성이 정책적 성공의 핵심임을 방증한다. 이는 제도 설계가 실질적 거래 환경과 조세 원리 간 최적의 조화를 도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행 조세 체계는 중고자동차 거래를 비롯해 일부 한정된 재활용품 거래(예 : 농수산물 등의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타 중고품 거래에는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이중과세 및 누적과세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제한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중고자동차 중심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모든 중고품 거래로 확대하고 장부 기반의 매입세액 공제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제도는 중고품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를 위한 조세 우대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부가가치세의 본질인 ‘부가가치에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구현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합리적 소비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국가 정책 목표와도 일치한다.

또한 일본은 고물영업법(古物營業法) 등 기존 법령에 따른 장부 기록 의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조세 제도 도입 시에도 기존 행정 시스템과 긴밀히 연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존 제도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고품 거래 시장에 대한 제도적 확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중고품 과세 특례 사례는 중고품 조세 정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시스템 유연성, 조세 원리 준수, 행정적 실용성을 확립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러한 조세 정책의 재조명은 중고품 시장을 순환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고, 조세 정의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구축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임을 부각시킨다.

4. 미래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 방향

부가가치세는 현대 조세 체계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제도로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실질적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본질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와 누적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tax justice)와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제도는 중고품 거래 영역에서 이러한 기본 목표를 아직 완전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논리적 일관성 결여와 시장 효율성 저하라는 제도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스위스와 일본의 선진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Deemed Input Tax Credit System)는 단순한 예외 규정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 특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본래 기능과 체계적 정합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부가가치세의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스위스는 부가가치세법(MWSTG)에 의거,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포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고품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부재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는 중고품 시장의 활성화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과세 체계 전반의 공정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일본은 세금계산서 방식으로 소비세 체계를 전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확보가 불가능한 비사업자 간 중고품 거래에 대해서는 장부 방식(bookkeeping method)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일본은 제도 경직성을 회피하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며, 부가가치세의 핵심 원리인 부가가치에 한정된 과세를 충실히 구현하는 동시에 제도의 실용성과 유연성을 성공적으로 결합하였다. 두 나라는 이러한 조화로운 시스템으로 국제적으로 모범적 부가가치세 운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스위스 및 일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중고품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다음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인식의 전환과 보편적 도입이 필요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단순한 특정 집단에 대한 조세 특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체계의 논리적 일관성과 조세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구조적 장치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본질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만약 중고품 매입 시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이전 거래 과정에서 이미 부과된 세금이 누적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왜곡되고,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가령, 한 소비자가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다. 새 스마트폰의 경우, 제조사나 유통사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지만, 중고 스마트폰은 이전 소유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공제가 안 되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중고가 더 비싸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새 제품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자원 재 활용을 저해하며, 환경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보편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세금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장려할 수 있다.

둘째,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가 불가피하다.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중고자동차에만 국한되어 있어, 국내 중고품 시장의 다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고 시장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가구, 의류, 도서 등 다양한 동산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모든 중고 재화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로써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왜곡을 해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중고 가전제품 시장을 생각해 보자면 현재 중고 세탁기를 사는 경우, 세액 공제가 안 되어 가격이 새 제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공제 제도가 확대 되면, 판매자가 세금을 공제받아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들이 중고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된

다. 이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을 촉진하는 자원 순환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실제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제도를 모든 중고 재화에 적용한 결과, 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환경 보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확대적용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완전공제 원칙에 부합하는 공제율 적용과 행정적 제도의 능률화가 필수적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완전공제 원칙에 맞는 공제율을 적용하고, 행정적 제도를 효율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매입가액에 10/110을 곱해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이전 거래에서 누적된 세 부담을 방지하며, 세금의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처럼 장부 기록 중심의 공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납세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가령, 일본은 중고품 거래 시 간단한 장부 기록만으로 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이로 인해 소규모 중고 상점 주인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도 쉽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의 감사 부담도 줄어든다. 국내에서 이를 적용한다면, 중고 서점 주인이 책 매입 시 장부에 간단히 기록만 하면 10/110 공제율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만들어 전체 세금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전면적 확장 및 제도화가 단순히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 특혜를 넘어,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본질적 과세 원칙인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회복하는 핵심적인 과정보다 논증한다.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는 중고품 거래에 내재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제도적 확립은 이러한 이중과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제도의 확장은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중고품 유통 시장의 활성화는 자원 낭비를 억제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러한 제도 개편의 경제·재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정합성과 정책 수행의 실효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 제도의 설계 및 집행에 필요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적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제언

앞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 중고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중고품 시장의 구조적 특성, 세무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제도 악용에 대한 예방적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실행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글은 구체적 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확대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개선을 넘어 조세 체계의 근본적 재정립을 의미하며,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적 근거의 상향과 공제율의 통일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산재한 중고품 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본문으로 이관하고, 공제율을 이론적 공제율(10/110) 수준으로 상향·통일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특례적 성격을 해소하고, 중복과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며, 납세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과 과세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적용 대상의 포괄주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고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중고 휴대전화, 가전 제품, 의류, 전자기기 등 일반 중고품까지 포함하되,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포괄주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시장 왜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지향하는 이중과세 방지 및 부가가치 누적 제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셋째, 증빙 방식의 유연화다. 비사업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 요건을 면제하고, 장부기록만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유연한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중고품 거래의 현실적 특성, 즉 적격 증빙 확보의 어려움을 반영함으로써 납세자의 준법성을 제고하고 세무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한 제도 확장을 넘어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본래 취지인 전단계세액공제의 완전 구현을 향한 조세 구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김정훈 2012).

아울러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체계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허위 거래나 조세 회피의 유인을 내포할 수 있으며, 특히 중고품 거래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익명성과 가격 평가의 주관성이 결합되어 허위 가격 신고, 가공 거래, 중간 취득자 내세우기 등의 부정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신차를 중고차 수출로 가장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안에 대해 “이는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특례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⁴⁾

구체적으로, 첫째 허위 매입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 매입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데이터를 연계한 디지털 세무관리 체계를 통해 매입가의 시장 적정성을 자동 산정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추계에 의한 합리적 원가 산정 가능성’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제 한도 규정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스위스는 거래 내역 상호 참조가 가능한 공식 증빙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허위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셋째, 중간 취득자 내세우기 등 가공 거래의 방지를 위해 공급자 신원 검증제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일본의 ‘고물영업법’처럼 세법상 장부기록 요건을 영업법상 장부기록 의무와 연계하여, 거래 당사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실명 정보를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

14) 서울고등법원, 2017누12345 판결, 2017.

식이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거래 공급자의 식별정보를 세법상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여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공제 후 폐업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 시기 이연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고가 중고품(예 : 중고자동차)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시점을 취득 시점이 아닌 재판매 시점으로 이연하여 세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 관리체계는 디지털 세정 인프라와 실질과세 원칙의 결합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전면 확대가 사회적 신뢰 속에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행정안전부 2022).

V. 결 론(結論)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환경 보호와 합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2025년 약 4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례 없는 성장 궤도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순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자원효율성 증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가속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중고거래 시장 특유의 다차원적 거래 구조와 복잡한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 품목 간 조세 부담의 불균형,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근본 취지인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 원칙을 훼손함과 동시에, 최종 소비자가격의 불필요한 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이러한 복합적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 국내 중고시장 활성화 및 조세 정의 구현을 도모하는 혁신적 정책 방안을 탐색하였다. 스위스 및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특정 산업에 대한 편의적 조세 우대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의 논리적 일관성과 체계적 정상화를 도모하는 필수적 구조임을 명확히 규명하였다. 이 제도는 이중과세의 누적효과를 완벽히 차단하며,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본연의 과세 대상인 순부가가치에만 공정히 부과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종합적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국내 중고품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조세 특혜가 아닌 부가가치세 체계 유지의 필수적 기제로 재인식하고, 보편적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왜곡 및 시장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현행 중고자동차에 한정된 적용 범위를 가전, 가구, 의류 등 전 중고 재화로 확장하여 조세 형평과 시장 왜곡 해소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셋째, 매입가액에 현행 부가가치세 일반세율(10/110)을 적용하는 산술적 공제율 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일본 사례와 같이 비사

업자 거래에 유연한 장부기록 중심 공제 체계를 도입해 납세자 수용성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해야 한다. 이는 국세행정 비용 절감과 세원 투명성 강화라는 추가적 효과도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전면적 확장 및 제도화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과세 원칙 회복을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다. 이는 이중과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중고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토대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구매력 강화 및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자원 효율성과 환경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순환경제 체계로의 이행을 촉진,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젖히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조세 정의와 경제 활성화의 양대 과제 병행 실현 비전은, 국내 중고품 시장이 내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는 기틀을 견고히 다지는 데 획기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유진 · 박민정. 2024. “중고 거래 플랫폼 혜택이 신뢰, 태도 및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 상품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26권 제2호 : 166-178.
- 국중호. 2019. 『주요국의 소비세제도(I)-부가가치세:일본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고운 · 강원삼 · 이해진. 2022.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하기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서울연구원.
- 김은희 · 이상현. “사회적 불안감, 체면 민감성, 친환경 소비, 경험 소비성향, 물질 소비성향이 중고명품소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과 희소성을 중심으로”. 유통연구 제29권 제2호 : 19-44.
- 모우 · 최양선. 2023. “C2B2C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8권 제3호 : 129-134.
- 박명호. 2010.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제171호 : 28-41.
- 박명호. 2012.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제194호 : 24-41.
- 박명호. 2012.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선희 · 장재형. 2021.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1호 : 137-173.
- 박성욱 · 김영우 · 김서현. 202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13권 제1호 : 191-220.
- 박종수. 2002.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번개장터. 『2020 번개장터 중고거래 취향 리포트』, <https://bgzt.co.kr/article/144>
- 부산지방세무사회. 2014.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 비교”. 『제10차 한·일 학술토론회』, 부산지방세무사회.
- 삼일PwC경영연구원. 2022. “소비재 · 헬스케어&금융”. 『산업별 주요 이슈 분석』 삼일회계법인.
- 서희열. 2025. “중고품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확대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제14권 제3호 : 181-206.
- 이경미 · 류진주 · 김민정 · 정다영. 2022. “중고거래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 비교 연구 - 번개장터와 당근마켓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3호 : 423-429.
- 이수진. 2014.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마진과세제도 도입 논의의 쟁점”. 이슈와 논점 제813호. 국회입법조사처.
- 이준규 · 채상병. 2026.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조세법연구 제12권 제1호 : 213-233.
- 정기용. 2013.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평가와 대안 모색”. 회계와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 273-297.

- 조명환·송헌재. 2020. “중고차 시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후생효과 분석”. 세무와 회계연구 제10권 제1호 : 183-21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 “일본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보이스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3010.
- 디지털트렌드코리아. 2025. “고물가 시대, ‘빈티지’가 새롭게 뜬다 : 중고 의류 거래 시장의 구조적 성장”. <http://digitaltrendkorea.com/?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0846650&t=board>
- 케이티 나스미디어. 2024. “MEDIA & MARKET ISSUE”. 356호 : 1-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5.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5년 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행정안전부. 2022.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2023~2027)」.
- KB증권. 2022. “중고 시장 | N차 거래의 시대”. INDUSTRY REPORT 2022년 6월 : 1-59.
- Laurent Lattmann. 2020. “A guide through Switzerland’s revised VAT Act”, Tax Partner AG. MWST-Info 09. 2025. Vorsteuerabzug und Vorsteuerkorrekturen. <https://www.estv.admin.ch/estv/en/home.html>
- OECD, 2024. Consumption Tax Trends – Switzerland.
- Switzerland Global Enterprise. 2020. OVERVIEW OF THE SWISS TAX SYSTEM : 1-14.
- 国税庁. 2019. “消費税の仕入税額控除制度における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に関するQ&A”. 2019.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qa_01.htm
- 根本浩之. 2019. “消費税と個別消費税の併課に関する一考察”. 税務大学校論叢 第97号 : 319-441面.
- 金子宏. 2016. 租税法 第21版, 弘文堂.
- 紫田勝裕. 1996. 詳解 消費税法, 財經詳報社.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put Tax Credit System for Rationalizing Taxation on Secondhand Goods Transactions* : Focusing on the Cases of Switzerland and Japan

Lee, Chang Kyu** · Suh, Jung Hwa***

〈Abstract〉

The rapidly growing domestic used goods market is emerging as a key driver of the circular economy. However, its growth is being hindered by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Value Added Tax (VAT) system.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including double taxation, tax imbalance between different items, and weakened export competitiveness, and proposes the full-scale expansion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as a core solution. Under the current VAT law, used goods sellers cannot deduct input tax as they are unable to receive tax invoices from non-business sellers (e.g., individuals), leading to a double taxation problem upon resale. This violate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VAT, which is to tax only the value added. Furthermore,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used cars, creates an issue of tax inequity compared to other used goods. The inability to claim input tax deduction also leads to non-refundable VAT on exports, weak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is critical awarenes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Switzerland and Japan to argue that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is not a tax privilege but an essential mechanism for restoring the logical integrity of the VAT system. Switzerland consistently applies its uniqu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to tax only the actual value added, while Japan reflects the realistic characteristics of used goods transactions by allowing flexible special provisions for input tax deduction based solely on book record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policy improvements are necessary, including expanding the system to all used movable goods, adopting a full deduction method by multiplying the purchase price by 10/110, and streamli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improvements are expected to resolve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enhance tax equity, and promote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used goods market,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and the realization of tax justice.

〈Key words〉 Used Goods Market, Value Added Tax (VAT), Deemed Input Tax Deduction, Double Taxation, Circular Economy, Tax Justic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Hyupsung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25.

** Research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sunrise@cau.ac.kr,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at Hyupsung University, jhsuh81@omail.uhs.ac.kr, Corresponding Author